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88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이의신청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 통지 및 불복수단 · 제기 기간 안내 의무 명시	4

I. 개요

1.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38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광상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19.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88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심판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5항은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같은 법 제88조제3항 역시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

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87조제5항·제6항 및 제88조제3항·제4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 통지 및 불복수단·제기기간 안내 의무 명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대해 그 결정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때 그에 대한 불복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8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87조(이의신청) ① ~ ④ (생략)	제87조(이의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⑤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⑥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제5항에 따라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u>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심판청구) ①·② (생략) <신설>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88조(심판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재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
---	---

※ 시행일: 공포한 날

나. 검토의견

- ☐ 현행법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

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제기와 심판청구가 이루어지고 처리되고 있음.

< 공단 및 심평원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단	접수	3,647	4,824	4,298	3,932	4,361
	처리	3,220	4,843	4,598	3,770	4,365
심평원	접수	550,746	630,585	538,609	349,922	308,247
	처리	567,614	584,405	609,724	460,872	330,568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 건수 >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접수	계		135,556	122,473	111,793	131,102	166,191
	당해연도	심평원	33,492	35,337	39,712	55,296	61,007
		공단	280	243	364	350	402
	이월		101,784	86,893	71,717	75,456	104,782
처리	계		48,663	50,756	36,337	26,320	37,978
	심평원		48,385	50,475	36,209	26,118	37,468
	공단		278	281	128	202	510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런데 공단 또는 심평원에 대한 이의신청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 현행법은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결정의 통지에 대해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음.

□ 한편, 「행정기본법」 제36조¹⁾는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의신청 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불복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먼저,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²⁾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
- 1)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여 각 개별법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령³⁾에 따라서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할 때 결정서 또는 재결서를 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보내고, 이때 해당 결정서 또는 재결서에는 불복수단과 그 제기기간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60조(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처분을 한 자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 이유
6. 결정 연월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법 제87조제1항·제2항 및 영 제56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심사평가원의 처분 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행정심판법」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결정서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재결서 중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귀 원(공단)에서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재결 결정 통지 양식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수신 청구인 귀하
(경유)

제목 제 []차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재결 결정 통지

1. 귀하께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제 []차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재결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2.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동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87조, 제88조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서 통지 시 불복수단과 제기기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내하고 있음. 다만, 통지방법을 ‘서면’으로만 규정할 경우 전자문서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 소지가 있어, 「행정절차법」 등 입법례와 전자행정 환경을 고려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법제처

- 이의신청인 등이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이하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같이 「행정기본법」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①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제36조제6항) 개정 규정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향후 「행정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개별법과 「행정기본법」 간의 내용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그 때마다 매

번 추가로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 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인 등이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목적은 달성하는 방법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등의 입법례⁴⁾와 같이 「행정기본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연결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정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2025.3.18.신설)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다른 법률의 이의신청 절차에도 해당 법률에 없는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여, 같은 조 제5항의 안내 의무가 건강보험 이의신청 절차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의무 명시는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 조문과의 일치를 위해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의신청의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해상교통안전법」 제52조(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과 같이 동일하게 문구 수정하여 ‘서면’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수정할 필요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